

시 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2173
결재일자	2017. 1. 26.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자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배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자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책 영 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2016년 추진실적	2
□ 2016년 사업추진실적 총괄	2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추진	4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	4
III. 2017년 추진계획	6
□ 서울시 노후경유차 등록현황	7
• 2005.12.31이전 등록 경유차량	
• 저공해 조치대상 현황(2.5톤 이상)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8
• 운행제한 개요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 저공해화 차량 사후관리	12
• DPF 부착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 DPF부착 청소차량 점검 실시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관리강화	
• 저감장치 제작사별 사후관리실태 평가	
IV. 추진일정	13
V. 행정사항	13
붙임 1. 2017년 사업별 예산현황.....	14
붙임 2.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15
붙임 3.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전예약차량 명단	붙임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PM-10)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추진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서울시등록 차량중 경유차(33%)가 교통부문 오염배출량 대부분 차지
 - 교통부문 배출량 중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 배출
 -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음
- 제2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15년 ~ '24년)
 - DPF 부착, 조기폐차 등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년)
 - PM-NOx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질소산화물 저감사업('15~'24년)
- 노후경유차 관리강화를 위한 연식별 「운행제한」 단계적 시행
 - 시행시기 : 서울('17년~). 인천·경기 17개시('18년), 전체('19년)
 - 제한대상 : '05년 이전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약 11.3만대)

2017년	+	2018년	+	2019년
52천대 ('02년 이전 등록)		31천대 ('04.6월 이전등록)		30천대 ('05년 이전 등록)

※ 개선대책 미시행시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5년~'24년) : 12조원(조기사망자 19,958명)
- WHO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12.6월)

□ 추진경과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03~'0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05년)
-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7년) 및 변경계획 수립('10년)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05~'14년) : 29만대
- 사후관리 전담기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설립('07.11월)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년) 및 서울시 시행계획('14) 수립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장방침 제246호, '16.8.26)

II

2016년 추진실적

□ 2016년 사업추진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대)

구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개조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삼원촉 매장치	
			차량	건설 기계							
장치 부착 (대)	추진 목표	17,590	15,400	5,320	30	50	10,000	2,190	260	130	1,800
	실적 (96.2%)	16,916 (96.2%)	15,214 (98.8%)	4,555 (85.6%)	159 (530%)	54 (108%)	10,446 (104.5%)	1,702 (77.7%)	316 (121.5%)	130 (100%)	1,256 (69.8%)
예산 집행 (백만원)	추진 목표	43,221	36,563	20,063	300	200	16,000	6,658	4,160	1,958	540
	실적 (99.5%)	43,013 (99.5%)	35,765 (97.8%)	20,191 (101%)	1,464 (488%)	214 (107%)	13,895 (86.8%)	7,248 (108.9%)	4,912 (118%)	1,958 (100%)	377 (69.8%)

※ 국·시비 매칭비율(50:50) 기준

1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 15,214대, 358억원

○ 추진실적

(단위 : 대)

구분	계	DPF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소계	DPF	경찰버스·청소차	건설기계(시범)		
목표	15,400	5,350	5,070	250	30	50	10,000
실적	15,214	4,714	4,311	244	159	54	10,446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저공해화 추진(4,768대)

- '05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 ▶ '16년 저공해조치명령 : 8,681대(2.5톤 이상 경유차)
- '02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 ◆ 노후 대형차(경찰버스, 청소차)의 자체발열형 DPF 추진(250대)
 - 경찰버스 DPF 부착 : 목표 100대, 부착 95대, 말소 5대(95%달성)
 - 청소차량 DPF 부착 : 목표 150대, 실적 149대(99%달성)
-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도로이동용 건설기계) DPF추진(시범부착)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159대 부착완료
 - ※ 보조금 : 대당 367~1,059만원(1종 DPF)

○ 조기폐차 추진(10,446대)

- 대상 : '05년식 이전 경유 사용자동차(2.5톤 미만 포함)
- ※ 보조금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85~110%(최대 770만원)

2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 1,702대, 72억원

○ 추진실적

(단위 : 대)

구분	계	PM-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삼원촉매장치
목표	2,190	130	260	1,800
실적	1,702	130	316	1,256

-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130대)
 - '02~'07년식, 배기량 5,800cc~17,000cc 대형차
- 대기관리 사각지역 건설기계 엔진교체(316대)
 - Tier 1('04.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전 생산된 굴삭기, 지게차
- 노후 삼원촉매장치 교체 추진(1,25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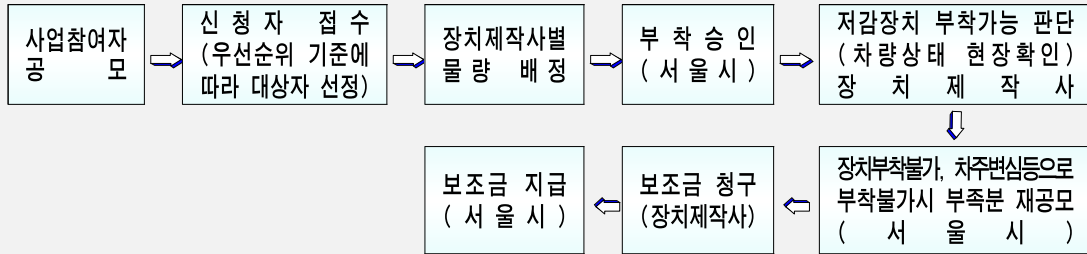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추진

- DPF 부착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연저감장치 성능확인 검사비(대당 : 3~4만원)
 - 지원실적 : 4,515대, 168,335천원('15.12.1~'16.11.30)
- 매연저감장치 탈거 차량 현황(12,402대)
 - 차량 이전, 수출폐차, 사고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 탈거 반납
- 탈거차량 보조금 회수 : 15대, 3,495만원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회수요율 20~70%) 회수
-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실적 : 12,156대
 - 대상 차량 : 제1종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클리닝비용 지원 : 대당 15만원
- 운행제한 위반 행정조치 : 경고 1,099대, 과태료 부과 594대
 -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미이행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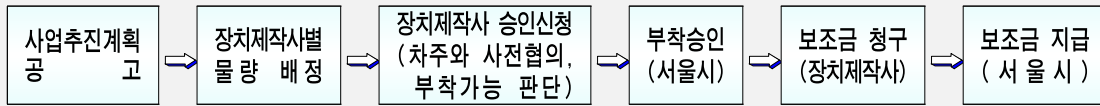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

- PM-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DPF 등의 경우 장치가 크고 복잡하여 공모후 부착대상 차량 다수가 장착공간 부족과 차주의 변심으로 저감장치 부착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방식 변경 (공모방식→사업공고 신청자에 한해 지원)

◆ 변경 전



◆ 변경 후



정책
목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면시행**’ 으로 교통부문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정책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24	23	22	21(당초)	20
($\mu\text{g}/\text{m}^3$) (실측)	24	23	26	22(조정)	

※ '17년 목표 21 $\mu\text{g}/\text{m}^3$ 은 기상변동 및 외부영향 증가 등 여건을 감안하여 22 $\mu\text{g}/\text{m}^3$ 으로 조정

추
진
방
향

-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25,539대**
 - 매연저감장치(일반차량, 건설기계)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LPG) : 5,039대
 - '17년 운행제한 대상중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9,353대 우선 추진
 -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 정화조차 200대 추진 ➡ '18년까지 전량추진(328대)
 - 운행제한과 연계한 조기폐차 대폭 확대 : 10,446대('16) ➡ 20,500대('17)
- ◆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저감 : 300대**
 - '07년이전 대형 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100대 부착
 - '04년 이전 굴삭기,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 200대 엔진교체
 - ※ 노후 굴삭기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시범사업 추진),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과제" ('16.12.1)
-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강화**
 - DPF 부착차량 성능유지비용 지원(3~4만원/대), 필터크리닝 비용지원(15만원/대)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관리 및 사후관리 점검 강화

1

서울시 노후경유차('05.이전) 등록현황

□ 2005.12.31이전 등록 경유차량

구 분	등록대수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저공해조치 미완료차량
합 계	321,335	60,264	261,071
2.5톤 이상	165,949	53,068	112,881
2.5톤 미만	155,386	6,305	149,082

※ 서울시 등록 총 경유자동차 대수 : 1,048,757대('16.10월 기준)

□ 저공해 조치대상 현황(2.5톤 이상)

○ 연식별 저공해조치 대상

계	'00년이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12,881	28,490	7,802	15,860	15,183	24,880	20,666

- 2.5톤 미만 149,082대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임

○ 용도별, 연식별 저공해조치 대상('17년 '02이전 차량 저공해화)

구분	합계	3.5톤 미만				3.5톤 이상			
		소계	관용	영업용	자가용	소계	관용	영업용	자가용
계	112,881	101,310	328	1,892	99,090	11,571	251	1,777	9,543
'02년 이전	52,158	42,805	23	758	42,024	9,353	45	1,026	8,282
'03년	15,184	14,806	40	129	14,637	378	18	171	189
'04년	24,880	24,247	110	432	23,705	633	63	204	366
'05년	20,663	19,456	155	573	18,728	1,207	125	376	706

- '17년 '02년 이전 3.5톤 이상 9,353대 우선 저공해 추진

2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운행제한 개요

- 시행시기 : 서울시('17), 인천·경기 17개市('18), 기타 대기관리권역('20)
- 적용대상 : '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 연차별 운행제한 추진대상(약 11.3만대)

2017년	+	2018년	+	2019년
52천대('02년 이전 등록)		31천대('04.6월 이전등록)		30천대('05년 이전 등록)

※ 차량노후화, 장치 미개발 등으로 인한 조기폐차 권고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

○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신차 구입시 지원 대책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및 상한액 상향

- ▶ 3.5톤미만의 경우 상한액(150→165만원), 지원율(차량기준가액의 85% →100%)

- 개별소비세 70% 감면(기간 : '16.12.5~'17.6.30)

- ▶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2개월이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제작사 할인혜택 제공(차종별 50~120만원)

- ▶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시 제작사 할인

○ 단속지점 확대 : '16년 13개 → '19년 61개(한양도성+시계 주요도로)

- '17년 32개(신규 19개) ⇒ '18년 48개(16개) ⇒ '19년 61개(13개)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① **매연저감장치(DPF)등 저공해사업 추진(사업비 57,334백만원)**

◆ **추진목표 : 25,539대**

(단위 : 대)

계	DPF부착				조기폐차
	소계	DPF (일반차량)	DPF (건설기계)	청소차, 정화조차(시범)	
25,539	5,039	4,639	200	200	20,500

○ **개선효과 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25,539대)**

- DPF 부착 5,039대(일반차량 4,839, 건설기계 200)

- ▶ '02~'05년식, 2.5톤이상(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 조치)
- ▶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2월중) 차량은 6개월 이내 저공해조치 이행(필요시 추가명령)

◆ '17년 운행제한 대상 중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9,353대 우선 추진

- '02년 이전등록 총 52,158대중 3.5톤이상 9,353대(관용 45, 영업용 1,026, 자가용 8,282)

◆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형 경유차 200대(청소차 150, 정화조차 50) 저공해화 추진

- 정화조·분뇨차 20대 시범설치운영(2~5월), 성능평가(6월), 본격추진(7~11월)

- '02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 '06~'07년식 기 명령받은 전세버스(대당 367~1,059만원, 1종 DPF 지원)

○ **운행제한 연계한 조기폐차 대폭 확대 : 10,446대('16) → 20,500대('17)**

- 조기폐차 대상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2.5톤 미만 포함)

▶ 미세먼지, NOx를 많이 배출하는 2.5톤 이상 노후 차량 중점 조기폐차

- 보조금 지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100~110%(최대 7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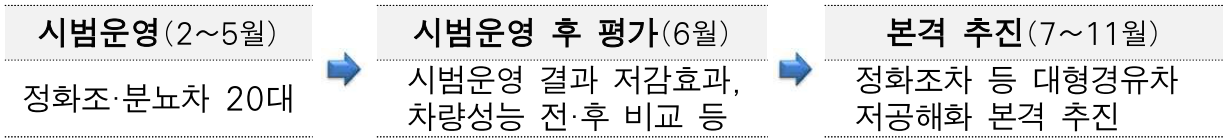
◆ 조기폐차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차량
-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가동** 되고 있는 차량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 가능토록 법령개정중

①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정화조차 200대 추진** → '18년까지 전량 완료(328대)

- 청소차 '자체발열형 DPF'부착 계속 추진(150대)
- 정화조(분뇨)차 '자체발열형 DPF' 시범부착 추진(50대)



② **덤프트럭 등 도로이동용 건설기계 DPF 추진(200대)**

- 추진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상)에 포함
- 추진방법 : 사업공고 후 부착 희망자 DPF 부착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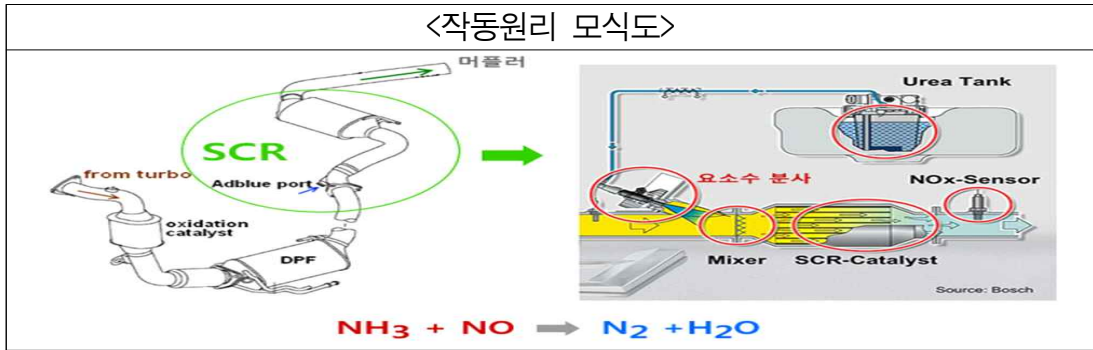
2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저감 (사업비 4,707백만원)**

◆ 추진목표 : 300대

계	PM-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300	100	200

①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100대)**

- 추진대상 : '02~'07년식, 배기량 5,800cc~17,000cc 대형차
- 작동원리 : 배기관 전단부에 DPF 부착하고, 배기가스에 암모니아 성분(NH3)를 후단부에서 NOx를 저감시키는 원리
- ▶ 개선효과 : 미세먼지 80%이상, 질소산화물 70% 이상 저감('14.12월 환경부)
- 추진방법 : 사업공고 후 부착 희망자 DPF 부착추진
- 소요예산 : 1,507백만원(국·시비 각 50%)
 - 필터클리닝비, 성능확인검사비, NOx저감용 요소수(NH3) 충전비용 등 지원



② 대기관리 사각지역 건설기계 엔진교체 추진

- 대 상 : Tier 1('04.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전
생산된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00대)
 - 지게차(2톤, 4톤, 6톤), 굴삭기(5톤, 14톤)
- 추진내용 : 엔진교체 대상차량 공모로 선정하여 구형엔진(Tier 1)을
최신 엔진(Tier 3 이상)으로 교체
 - ▶ 개선효과 : 미세먼지 80%이상, 질소산화물 70% 이상 저감('14.12월 환경부)
- 소요예산 : 3,200백만원(국·시비 50%)



③ 노후 굴삭기 엔진교체(경유엔진→ 전기모터) 추진(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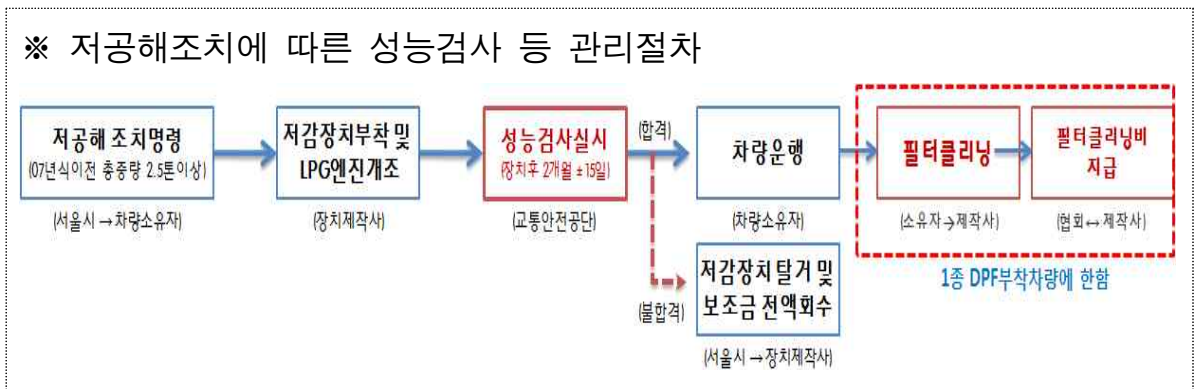
- 폐기물업체, 폐차장 등 수요조사 후 시범교체 추진
 - 시장조사(~3월), 물량 파악 및 계획수립(~5월), 시범추진(~10월)
- 보조금 지원 : 20톤 기준 대당 15,265천원(국·시비 50%)
 - ※ 경유 대신 전기사용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3

저공해한 차량 사후관리 강화

□ DPF 부착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 매연저감장치 성능확인 검사비 지원 : 3~4만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2개월±15일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확인 실시
- 1종DPF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지원 : 15만원/년(10개월 또는 10만 km)



- LPG엔진개조 차량 무상점검비 지원 : 최초 1회 3.5만원(3~6개월 이내)

□ DPF부착 청소차량 점검 실시('17.1~10월)

- 점검방법 : 친환경기동반 및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저감장치 부착여부, 필터 등 장치 훼손여부 확인 등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관리강화(LEZ단속시스템 연계)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차량(6개월 이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등록관리
 - 위반시 조치 : 1회 경고, 2회 부터 위반시 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 저감장치 제작사별 사후관리실태 평가

- A/S지연, 잦은 고장 등 민원접수 내용을 평가하여 20% 이내 물량 가감

IV

추진일정

□ 저공해사업 제작사 회의 개최(1월, 필요시)

- '17년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을 제고방안 등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 : 2월 ~ 11월

- 3.5톤이상 저공해조치 명령(2월, 필요시), 청소차 및 정화조차 저공해 명령(3월)
- 건설기계 DPF부착 차량 공고(3월), 부착승인 및 부착(4~10월)

□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공고(3~4월), 부착추진(3월~11월)

- PM-NO_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대형차 청소차 및 정화조(분뇨)차 저감장치 부착추진

- 청소차 저공해 조치명령(3월), 저감장치 부착(3~10월)
- 정화조(분뇨차) 저공해조치 명령 및 시범부착 20대(3~5월), 시범부착 평가(6월), 본격 부착추진(7~10월)

□ 굴삭기 엔진교체(전기모터) 시범사업 추진

- 수요조사(2~5월), 교체추진(5월~10월)

IV

행정사항

□ '16년 상반기 저공해 조치명령후 예산소진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한 차량중 사전예약(자동차환경협회, 장치제작사, 서울시 등) 차량 우선 부착 추진(1,189대)

- '16년 12.9일 사전예약(849대, 대기관리과-23684, 2016.12.14.)
- '16년 12.10일부터 현재까지 예약 분 : 340대

붙임 1. 2017년 사업별 예산현황 1부.

2.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1부.

3.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전예약차량 명단 1부. 끝.

[붙임 1]

2017년 사업별 예산현황

사 업 명		물 량(대)	예 산(백만원)
계		25,839	62,041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추진		25,539	57,334
DPF부착	소 계	5,039	24,500
	DPF(일반차량)	4,639	20,478
	DPF(건설기계)	200	2,011
	청소차 정화조(분뇨)차(시범)	200	2,011
조기폐차		20,500	32,834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300	4,707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100	1,507
건설기계 엔진교체		200	3,200

※ 저공해조치명령 촉구안내, 저공해사업 홍보비용 : 100백만원

[붙임 2]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 '17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732	5,159	573	10.00%	462	
	자연중형		5,367	4,830	537	10.00%	462	
	복합대형		10,308	9,277	1,031	10.00%	462	
	복합중형		7,759	6,983	776	10.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35	3,268	467	12.50%	462	
		화물	3,734	3,361	373	10.00%	462	
p-DPF	중형		2,423	2,072	351	14.50%	12	
	소 형 (A)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22	1,429	293	17.00%	12
			화물	1,722	1,472	250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722	1,464	258	15.00%	12
			화물	1,722	1,507	215	12.50%	12
	소 형 (B)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52	1,620	332	17.00%	12
			화물	1,952	1,669	283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52	1,659	293	15.00%	12
			화물	1,952	1,708	244	12.50%	12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일체형 A	13,629	12,266	1,363	1,782
일체형 B	15,196	13,676	1,520	1,782
분리형	6,000	5,400	600	1,332

※ 일체형 A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크린어스이고, 일체형 B 장치제작사는 이엔드디, 일진복합임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388	9,349	1,039	462
중형	7,400	6,660	740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계 차			굴 삭 기	
	2톤 ¹⁾	4톤	6톤	5톤 ²⁾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0%)	2,729 (13.0%)	3,037 (13.0%)	2,497 (13.0%)	4,459 (15.0%)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계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전기굴삭기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굴삭기		
	14톤	20톤	30톤
장치가격	34,632	38,163	41,269
보조금	13,853	15,265	16,508
자기부담금 (부담율)	20,779 (60%)	22,898 (60%)	24,761 (6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차령 7년이상 경유차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원금액 :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